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01일 (수)

제 26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2.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3.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국회인권포럼', 사립학교 '권리' 지키느라 학생 '인권'은 뒷전

강의석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의가 '평준화 해체' 논의로 둔갑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인권포럼'이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3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번 토론회의 주 발제를 한 손봉호(전 서울대 사범대 교수) 씨는 "자신은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발제를 준비했다"며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어서였을까. 손 씨는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계속되어 왔던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논의를 뒤로한 채 다짜고짜 '평준화 해체'가 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 씨는 "시민사회에서 궁극적으로 '개인'이 종교나 교육 등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하게 되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평준화 정책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학교 예배나 종교과목에 대한 강력한 거부가 공식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없었던 것은 기독교학교가 '예배 참석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회가 묵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껌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집이 무너져 사람이 깔려죽게 생겼는데 사람을 구할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설계도면을 내미는 것과 같다"며 "교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지금 당장 보장할 수 있는 방안부터 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 활동가는 "사립학교 내 종교교육의 권리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종교교육을 원하는 학생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 교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송기춘 법학과 교수도 "종교의례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거짓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꼴"이라며 "평준화 해체'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종교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현재의 최저생계비로 먹고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폭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결국엔 고립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진행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에 함께 했던 참가자의 소감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99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앞두고 31일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1인 가구에 36만 8226원, 4인 가구에는 105만 5090원이 책정돼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보건의료비는 1만 7463원, 교통통신비는 2만 2878원에 지나지 않는다. 동덕여대 남기철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적은 액수"라며 "특히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은 실제 가구의 지출에 기초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순천향대 허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가 스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잠·스장애인이거나 환자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스실제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반가구의 생활수준과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계속되어야 한다"며 일반 가구의 가구소득·가계지출·소비지출에 따른 비율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토론회 참가자들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국가가 복지분야에서 직접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최저생계비 항목에서 분리시켜 최저생계비 계속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빈곤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적 접근은 부족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유익선 사무국장은 "최저생계비는 금액으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계를 사회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이번 토론회가 최저생계비에만 국한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기사 처음으로>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1.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선언'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 단속 강화에 따라 해고됐다.(8/4) 법무부는 공장, 주택, 길거리 등에서 영장이나 보호 명령서 없이 급습해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에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를 배포했다.(8/16)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구타·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급증했다.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투쟁단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단속추방 중단·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8/17)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단속에 항의하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사무소 측은 "폭력단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8/23)

2. 필요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감시'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2명의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총기규제 완화'와 '대체무기 도입'을 주장했다.(8/1) 경찰이 미아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경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인권단체들이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8/10) 경찰청이 '공권력 확립 종합 대책'을 통해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이나 구류·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8/12)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 폐지'를 주장했다.(8/17)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CCTV관제 센터'를 열고 272대의 감시카메라를 강남구 19개 동의 주요 골목 등에 설치, 가동을 시작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감시를 통해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난했다.(8/25)

3. 국가보안법 시대는 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4) 민변과 민주법연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를 발간하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8/16) 329개 인권·사회단체는 "국회소속 과거사진상규명기구 설립을 반대"하며 "진상규명 위해 국회 밖에서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통합적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8/20)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독립적인 과거사 진상규명기구 설치에 합의했다.(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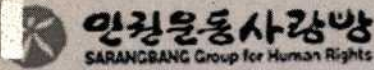
4. 과거사 진상규명은 오늘역의 역사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데 이어 국정원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8/16) 329개 인권·사회단체는 "국회소속 과거사진상규명기구 설립을 반대"하며 "진상규명 위해 국회 밖에서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통합적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8/20)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독립적인 과거사 진상규명기구 설치에 합의했다.(8/23)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민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02일 (목)
제 2647 호
발행처 : 인본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 한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2.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3.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4. 폐쇄 결정된 성실중앙원, 인권침해 여전
5.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전히 남겨둔 채 몇 글자만 부분적으로 고친 개정안을 마련해 '생색내기'에 그쳤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7조(찬양·고무 등) 가운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대체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조항 삭제 △참고인에 대한 구인 규정 삭제 검토 △허위사실 남조·유포죄의 형량 경감 등에 머물고 있다.

1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안정적 개정을 위한 모임(아래 개정모임)'이 발표한 개정안 역시 국보법의 폐쇄 증 병산의 일각만 건드렸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개정안과 다르지 않다. 개정모임은 7조 1항에서 '찬양', '고무' 두 단어만 삭제하고 '선전'에 대한 처벌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으며, 같은 조 이적표현물 관련 5항에서도 '소지' 단어만 삭제한 채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적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7조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는 것은 자기검열의 폐해와 얽어매기식 사상 탄압의 역사를 고스란히 되풀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더구나 개정모임은 이미 사문화된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지 않고, 3조(반국가단체 구성)와 4조(목적수행)에 대한 불고지죄를 살려두기로 해 오히려 독소조항을 부활시키는 의미마저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평이다. '정부참칭'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2조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게 생겼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사실상 국보안에 손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셈"이라며 "국보법의 남용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폐지만이 답이며 시대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 역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 정통세력이 행정부와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맞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국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무리 일부라고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런 것을 국보법 개정안이라고 내놓고도 '민주개혁 정통세력'을 '참칭'할 수 있는지 화가 날 따름"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17대 정기국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실제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설지, 아니면 끝내 '흙내내기'에 그칠지 주목할 일이다.

<기사 처음으로>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광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보전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강의석군 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학생신분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잘못된 관행에 불복중했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또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측은 이제라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석 학생은 "내일부터 학교에 가게 돼 기쁘다"며 "본안소송에서도 퇴학처분은 반드시 무효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국가인권위, 전문성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맡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인권교육의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사업을 맡겨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지난 7월 '인권교육강사 능력향상과정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한 인권위는 8월 25일 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검찰, 경찰, 교정 공무원(법집행 분야)과 초·중등학교 교사(학교 분야)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각각 2박 3일간 실시된다.

이에 대해 1일 '인권교육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네트워크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방송통신대 산학협력단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은 전혀 갖추지 못한 기관"이라며 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할 기관으로서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집행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교육기관을 무리하게 선정함으로써 인권위가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의 의견이다.

인권교육의 방법론적 원칙인 '참여형 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녹아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네트워크는 "많은 주제들이 짧은 강연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참가자의 감수성을 증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는 "이미 학교 인권교육 분야는 오랜 연구와 고민을 진척시켜 왔던 반면, 법집행 분야의 경우 제대로 된 프로그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미 지난 7월 23일 네트워크가 인권위에 전달한 질의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지 않고 일부 내용만 보완한 채 그대로 사업을 강행, 네트워크가 우려했던 바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인권교육담당관실 김철홍 과장은 "좋은 의견을 주어 고맙다"면서도 "이 사업은 이미 공고까지 나갔고 예산도 잡혀 있었다. 또한 법무부등에서도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최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며 "잘못된 부분은 향후에 차근차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권교육네트워크는 9월과 10월에 예정돼 있는 위탁교육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해 최종적인 평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심각한 인권침해로 폐쇄가 결정된 미신고 복지시설이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 신규입소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정신과전문의와 함께 지난해 문제가 됐던 미신고 복지시설 '성실정양원'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성실정양원은 정신질환자 등을 불법적으로 수용해 강제감금, 폭력, 강제투약, 강제노역, 횡령 등을 일삼아오다 지난해 11월 수용자의 신고와 인권

단체들의 조사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구속됐던 손아무개 부원장이 지난달 25일 정신보건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실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올 5월까지 성실정양원의 수용자 204명을 모두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 약속했고, 시설 측도 기도원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수용자 204명 중 지난 6월까지 퇴소한 사람은 86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날 시설공대위의 조사에 따르면, 시설측이 제출한 퇴소명단 가운데 최소 일곱 명 이상이 다시 시설에 들어와 있었으며, 전혀 퇴소 사실이 없는 사람이 퇴소자 명단에 허위로 올라와 있기도 했다. 심지어 시설측은 신규 입소자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다.

퇴소자 명단에 허위로 이름이 올라가 있던 최아무개 씨는 "8월 중순에 가족이 한 번 퇴소를 시켜줬다가 일주일 후 다시 집어넣었다"며 "이런 곳에 갇혀 있으면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당장이라도 퇴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최 씨의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강제 입소되었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울타리와 철조망, 창문 쇠창살 설치, 전화 통제, 신앙과 무관한 강제 예배 등도 여전히 '무기한 감옥'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경기도 측은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이날 조사에 동참한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이경숙 계장은 "신규 입소나 허위 퇴소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시설 개선을 방관해 왔음을 시인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활동가는 "시설 책임자가 사법처리되고 정부가 지난 5월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는데도 폐쇄는커녕 애초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책임을 져야 할 경기도와 해당 보건소 등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는나"고 되물었다.

<기사 처음으로>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눈에 띈다.

변호인 참여 자의적 제한 길 터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형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불허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명문화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호인의 참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 제지, 특정 답변·진술 반복 유도 등 신문을 방해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신문 방해로 규정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상희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이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서는 "제한 없는 변호인의 참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필요

국선변호인을 확대하겠다는 개정 방침은 환영할 만하나, 모든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 사유가 있는 피고인' 등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가 허용돼 왔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전원에 대해 국선 변호를 확대하고, 이외에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장경숙 변호사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피의자가 체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변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신 구속 '영장주의'에 충실해야

긴급체포를 남용해 온 그간의 관행이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개정안은 '긴급체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즉시 석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본운동사랑방 고근에 활동가는 "긴급체포의 근본 문제는 몇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외'인 만큼 현행법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영장을 통한 인신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체포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불기소처분 불복 대상 전면 확대해야

개정안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가운데 하나인 재정신청 대상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대상으로 형법상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등 11개 범죄를 추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상희 변호사도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대상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록 접근권 제한 없어야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제한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만 피고인·변호인이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장경옥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다가 이번 개정안은 일반 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50일로 규정된 기소 전 구금일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장기간 구금일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단체는 물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왔다. 그 외 △재심요건의 대폭 완화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눈감고 있다.

50년만에 찾아온 대대적인 형소법 개정이 시능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03일 (금)
제 26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2. 팽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3.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4.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5. [기고]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날'이 남긴 것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무개 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각각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국보법 폐지 흐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강행해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향후로도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체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보법 존치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의 국보법 존치를 향한 일편단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적 표현물 취득, 소지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대법원이 레드 콤플렉스에 젖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판결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 50여 년간의 관례에 갇혀 고리타분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미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많은 법률과 다른 해석을 하며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깎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와 같은 자의적 해석을 통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극히 퇴영적이고 일방적인 논리만을 대변하며 편향적인 견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아래 시민협) 등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청회장에서 강제로 끌어내 경찰버스까지 200여 미터나 되는 거리를 끌고 가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

시민협 등의 발표에 따르면, 임신 6주 채인 민주노동당 오경아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으나 경찰들에 의해 사지가 들러 나갔다. 민주노동당 남정수 평택을지구당 위원장은 강력계 형사반장의 지휘 아래 공청회 연단 바깥으로 끌려나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민주노동당 현호현 평택안성지구협 부의장은 경찰버스 승강 계단에 엮어진 상태로 온몸을 가려 당했다.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 정보과 조아무개 경사는 "공청회를 못하게 난동을 부리니까 데리고 나오는 와중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을 목격했던 민주노동당 허은과 평택을 지구당 사무국장은 "사지가 들러 끌려나오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경찰과) 실랑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에바다 사건 등 평택경찰서와의 계속된 싸움 속에서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을 경찰이 찍어서 연행하는 도중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민협 등은 폭행책임자 사법처리, 평택경찰서장 파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실과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지난달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음에도 경찰혁신위원회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경찰력 강화를 다시금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주 발제자인 경찰대 김형준 교수요원은 "권한이 남용될까봐 아예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기대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고, 권한 없는 책임을 수행하면 직업적 사명감으로 인해 월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나섰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강제와 행정형벌을 통해 불심검문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불심검문과 관련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지지했다.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시 거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요원은 "불심검문 시 신원확인불응자에 대한 구금조치 등 강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역시 발제를 맡은 연세대 법학과 한건우 교수도 "과태료나 범칙금의 부과(경찰관)의 의무행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경찰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인권존중과 양립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장경욱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경찰 권한 남용의 우려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의 불편과 불쾌감을 가중시키고, 진술거부권·신체의 자유 침해가 명백하다"며 "경찰의 시도는 경찰행정편의적 입장에 따른 이기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진술거부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이 형사상 불리할 경우에 목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1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장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등 어디서나 그 진술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 목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기본권이 존재한다"며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위해 피검문자에게 진술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강제나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심검문 시 신원확인불응자에 대해 구금조치까지 취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자유 제한 여부까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제한 여부를 사법권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기사용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거침없이' 제기됐다. 김 교수요원은 "총기를 지닌 경찰관이 저항하는 자에 대해 '정당방위 상황'으로 대처함으로써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방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체사격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하체를 겨냥한 사격인 경우 상체가 피격되더라도 정당한 공무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가벼운 저항에도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으로 판단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장비와는 달리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기 오·남용이 불러올 비극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총기사용은 오직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총기사용 대신 경찰관의 교육

과 훈련을 통한 대화기법 습득과 침착성 고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토론에 참가한 KBS 이준상 해설위원은 "공권력 강화는 경찰의 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하는 의미이지 총기 사용이나 불심검문 강제력을 강화하는 의미는 아니"라며 "공권력 확립은 경찰의 자질 강화와 체계 정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찰은 여론의 못매를 의식한 듯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의 정당성을 설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경찰 스스로 '인권과수꾼'으로 거듭 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이때 '권한강화'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경찰 스스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형소법 공동행동)은 그동안 법무부와 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형소법 공동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수사상 인권침해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온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인권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자기 진술이나 자기 방어를 원활히 하지 못해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상 불리하게 벌을 적용받거나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받아 범인으로 몰리는 일 등 장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인권팀장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일어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형소법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형소법에서 가족 등에 한정하고 있는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할 것 △보조인선정 고지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재판서의 등·초본, 조서의 작성 및 열람 시 개인의 장애에 맞게 통역인이나 보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 등 진술능력 취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에 관한 상시교육을 의무화 할 것 등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기고]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날'이 남긴 것

지난달 26일 여성부 앞에 간병인,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모였다.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이들은 여성들이 이렇게 저임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여성부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은 통계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 중 여성이 64%라니 더 말할 게 뭐 있겠는가. 여성 집중 업종이나 직종은 어김없이 비정규직이고 저임금이니, 여성이 저임금 노동자층을 이루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 투쟁에 나서면서부터 유독 여성 노동자가 더 가난하고 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가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청소용역 노동자가, 간병노동자가, 가사도우미 노동자가 각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자 전체의 문제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조를 만들고 나서야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월급을 받게 된 청소용역 노동자에게 24시간 일하고도 최저임금 미만인 간병노동자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얼마 안 되는 일당을 때어 직업소개소에 쫓겨야 하는 일용직 가사도우미의 사정은 하는 일없이 월회비를 꼬박꼬박 떼가는 유료소개소에 전지러치는 간병노동자와 다르지 않았다. 여성노동자들을 빈곤 상태로 몰아넣는 저임금 문제는 여성 노동자라면, 여성노동권 문제를 고민하는 이라면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과제이다.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날' 행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고,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과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민주노총 여성연맹, 고려대 청소용역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집회를 기획할 때만 해도 '비정규직, 빈곤의 문제라면 노동

부나 보건복지부에 대해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의 비정규직화, 저임금 문제에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관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이를 '여성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이 절실하다.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의 일로 굳어진 청소, 보육, 간병, 상품 판매, 식당일 등이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이라는 사실은 '여성의 일', '가족영역에서의 일'로 정형화될 경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빨래, 요리 등의 재생산 노동들이 여성들에 의해 무급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미화원, 식당 노동자, 보육교사 등의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루 8시간 꼬박 일하고도 총액 60만원 정도 받는 청소 노동자, 하루 24시간씩 주6일 근무해도 일당 5만원 밖에 못 받는 간병인의 현실은 이렇게 합리화돼 왔다.

때문에 저임금 문제는 여성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현 시기 중요한 여성 현안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관계를 이루려면 여성의 경제적 독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땅에서 여성이 그럴듯한 일자리를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아니면 구하기도 힘들고 정규직이라고 해봐야 언제 구조조정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 비정규직과 저임금 문제를 여성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잡을 것을 요구했지만, 여성부는 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상황과 요구를 나누고 저임금 타파라는 공통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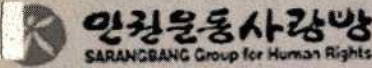
그 날 우리는 '직업소개소, 용역회사의 중간착취 근절', '일용노동자를 위한 공공직업소개소의 활성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로 내걸었다. 이 요구들은 최근 여성비정규직들의 투쟁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에 여러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행사는 저임금 여성노동 문제를 고민하는 조직과 개인이 모여 빈곤과 저임금을 여성의 문제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여성의 빈곤과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 더 큰 전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더 활발한 논의와 투쟁이 요구된다.

◎구미영님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04일 (토)
제 26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2.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3.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4. '도둑 파병'에 이어 연장까지?
5. <알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대회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겠다는 흐름이 정치권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국정원을 필두로 하여 과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정치공작을 자행했던 기관들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한계를 미리부터 설정하려는 의도들이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과거청산을 한낱 역사학자들의 연구작업으로만 한정하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이를 주도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부터 책임자 처벌을 제외한다고 하면 뭔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은 과거청산을 불처벌(impunity)이란 개념으로 정리해 왔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거의 무제한적인 원상회복 조치와 국가의 기억의무까지 포함하는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한 뒤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논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수순이다.

또한 정부는 '반인도적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부작용조약'에 가입하고,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별법 제정은 같이 추진해야 한다. '공소시효'라는 안전판 뒤로 학살과 고문의 가해자들이 숨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은 1백년도 넘는 근·현대사를 청산하겠다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과거 청산의 대상을 인권유린 사건, 정치의혹 사건 등 개별적인 의혹사건으로 한정해서도 안 된다. 개별 의혹 사건이 발생하도록 한 당시 국가의 시스템과 기구, 법제의 문제는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령 90년대까지 이어져왔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규명할 때 '강기훈 유서대필사건'과 같은 의혹사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달려나오게 된다.

과거청산은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괜히 진실의 언저리만 건드리다 말 것이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한은 더 깊어지고, 기득권 세력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미리부터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기사 처음으로>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지난 100년간은 패·왜곡되어온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3일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원 정호기 연구교수는 "한국에서 과거청산은 정치체제의 변동기마다 쟁점으로 부상되었지만 정부와 정치세력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교수는 "그동안 과거청산과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들이 진상규명을 우선적 업무로 두고 있었지만, 가해자가 누구였는가를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고 비판

했다. 성공회대 김동준 교수도 "국가권력을 잘못 행사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했던 법, 제도 등 가해환경에 대한 청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과거청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 '보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대중 마무리되어 온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연구교수는 "국가가 대중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상법을 활용했다"고 비난하고,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보상은 신중하게 고려해 개인이 아닌 집단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과거청산입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장완익 변호사는 "그동안 개별 과거청산입법들이 일정한 기준 없어 진행되면서 형평성의 문제 등이 생겼다"며 "과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교수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과거청산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인 권한 없이 진행될 경우 하나하나한 것이 되고 결국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 권한을 가진 국가기구가 과거청산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과거청산을 역사학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과거청산을 역사해석 작업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국가가 행한 인권침해를 왜 역사학자에게 맡기냐"고 반문,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이상 '과거청산'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무색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를 직시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를 '기억'하는 일은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처음으로>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한국에서의 삶 그대로 담아내

이주노동자들의 세밀한 삶의 결을 담아낸 영상물이 제작되어, 동정의 대상이나 폭력적인 단속주방 대상으로 간주되던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아래 한독협),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미디어 참세상은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죽거나 혹은 떠나거나'를 제작했다. 이 영상물은 9개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제안자인 이마리오 감독은 "지난 4월 명동성당에 있는 이주노동자 농성단에 카메라를 든 독립영화인으로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인터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독협 회원은 물론이고 대학생, 일반 시민 등 평소 이주노동자 운동에 연대를 희망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6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영상물은 '이주노동자의 삶과 이주노동자가 바라본 한국사회'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8월 서로 다른 듯 닮은 이주노동자들의 절곡과 꿈을 노래한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본국에서 한국에 오게 된 계기와 당시 품었던 장밋빛 희망, 노동 착취에 시달리며 보냈던 고된 나날들, 동지들이 하나둘씩 죽어 가는 상황에서 새겨진 심신의 깊은 상처, 가혹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 막막한 심정 등 이주노동자들이 마음 한 구석에 수북히 쌓아놓았던 녹록치 않은 얘기들이 가득하다.

프로젝트의 총연출을 맡은 주현숙 감독은 "이주노동자들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들도 역시 자신의 생각을 갖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이라는 걸 환기시키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마치 그동안 존재했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싹 지워지는 듯 정부는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영상물을 통해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고용허가제 시행일인 8월 17일에 맞춰 상영을 시작한 이유도 이주노동자들의 진솔한 삶의 애기와 대비되는 고용허가제의 잔혹함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주 감독은 "주류 미디어는 '보고 싶은 것'만 부각시키며 정작 이주노동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수동적 대상으로 취급되던 이주노동자들이 실은 능동적 주체라는 점을 상기시키려는 작업임을 강조했다. 감독이 인터뷰 대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원한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도, 그리고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어로 인터뷰에 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주 감독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리 한국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는 제2외국어이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다"며 "어눌한 말투와 부족한 언어 구사력이 불가피하게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언어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의 권력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죽거나 혹은 떠나거나'는 현재 현재 미디어 참세상 (<http://interview.jinbo.net>)에서 볼 수 있으며, DVD와 국내 영화계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활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백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도둑 파병'에 이어 연장까지?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군해야 할 마당에 정부가 오히려 파병 연장을 시도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3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파병 연장 시도 반대와 자이툰부대 철수를 촉구했다. 또 추가파병과 파병연장 저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전국을 도는 '단식평화순례'도 시작된다.

국민행동은 "미군과 그 꼭두각시인 임시정부가 이라크 저항세력과 연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에 서둘러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나서서 전쟁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자이툰부대에 테러경계령까지 내리면서 '묻지마'식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역사에서 학살 전쟁을 그냥 넘긴 적은 없었다"며 "노무현 정부가 학살전쟁을 지원한 것은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일째 단식기도를 하고 있는 김재복 수사도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화작가 박기범 씨와 함께 '단식평화순례'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도는 7월 26일부터 추가파병 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염원하며 명동성당과 청와대에서 단식기도를 지속해 왔으며 박 씨도 경북 울진에서 26일간 단식을 진행해 왔다.

단식평화순례에 동행할 평화유랑단 문정현 신부는 "정부의 '도둑 파병'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순례를 떠나는 것"이라며 '단식평화순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수사도는 "생명과 평화, 한국군 완전 철군과 이라크 평화를 염원하며 희망의 고리, 생명 평화의 고리를 만나는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수천 수만의 희망을 안고 다시 이곳 청와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단식평화순례'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서울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대회

일시 : 2004년 9월 5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07일 (화)
제 26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2.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3.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4. 주간인권호를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 모집에서 임시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적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전송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와 네이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교육학술정보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뒤늦게 사태를 수습해 네이스에 집적된 수백명의 학생정보가 민간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교에 제공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사태가 네이스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은 네이스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답답 교사가 학생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은 후 대학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이스의 보안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강조,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이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왔으며 네이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지 기술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식과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온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월에도 교육부는 EBS 수능방송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신상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해 정보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관련기사 7월 15일자 참조>

더욱이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민간업체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어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설령(교육부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관리능력 부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 "그러나 이미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교육부가 늦장 대응을 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임시와 관련해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임시 관련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전송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스네이스 중단 및 새로운 시스템 도입 △학생들의 정보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 감독 기구 설치와 법·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서슬 퍼런 한국 현대사를 주도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한평생 체감한 한 원로 인사가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재판 거부에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 이종린 명예 의장은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

연대 등의 주축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재판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명예 의장은 일본에 있는 법민련을 통해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북한에게 제공하고, 북한으로부터 사무실 경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8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6일 첫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명예 의장은 법정 출두를 거부한 채 "본인의 작은 노력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재판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 명예 의장은 민자통 사건, 인혁당 이성재 사건, 범민족대회사건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징역을 치러야 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근수 대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존립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라며 이 명예 의장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홍 대표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평화 운동이나 통일 운동 활동가들 모두가 구속되고 사형 당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이미 실정법 상의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 역시 "평양 국제 친선관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나 생색내기 식 개정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선물이 준비한데 그렇다면 이들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라고 꼬집고,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한 생명체가 엄마의 뱃속에서 성장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10달간 지켜본 후, 나는 드디어 한 아이의 아빠가 됐다. 내 아내는 4~5일 동안 산통을 하고 출산 당일 분만 촉진제까지 맞았으나 끝내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응애, 응애애... 아이의 울음소리는 아내와 고통을 함께 하려고 진땀을 빼던 나에게 청량제와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관행처럼 유지돼 온 이 사회의 불합리를 이 아이에게만 씬은 강요하지 않겠노라고!

그 첫 번째 실천으로 나는 아이의 이름짓기에서부터 평등의 가치를 녹여내려 했다. 그래서 내 성과 아내의 성을 모두 아이의 이름에 넣고 싶었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의 성은 부성'만'을 따라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우리 아이가 부계 혈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의 이름 앞에 아내의 성을 붙여 출생신고서의 이름란에 기입하는 편법을 써야 했다.

부부양성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겪은 또 하나의 어려움은 가족 구성원들의 반발이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이름짓는 법은 없다며 필적 뒀었다. 형제들은 꼭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하나며 불만을 표했고, 아버지 또한 끝내 동의할 하지 않으셨다. 처가 식구들도 이 '해괴한' 이름짓기 방식에 낯설어하며 힘이 되어 주지 못했고, 상황이 이쯤 되자 아내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부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물론 가족들의 반응이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어쩌면 이들은 엄마의 성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엄마의 성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일 게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 못함'은 부성만을 강제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호주제'인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제 호주제 폐지가 초입기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아버지의 성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성 강제주의가 현행 호주제의 핵심 중 하나다. 또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많은 호주제 폐지운동 단체들도 부성 강제주의를 부성 원칙주의 정도로 개선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의 합의 아래 모성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부계 혈통을 당연시하는 현실에서 아이의 이름에 모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더군다나 부부성을 함께 쓰고 싶은 나같은 경우에 부성 원칙주의는 결코 대안일 수 없다.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을 한 지 7년이 지났다. 이제 그 선언에 동의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부부성을 함께 물려주려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호주제 폐지와 함께 부부양성 쓰기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 범용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1. 학내 종교의 자유, 갈 길이 아직 멀다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 요구하며 강의석 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 '합의'로 종결... 강의석 학생의 복학조치는 빠져(8.29)/ '국회인권포럼', 토론회에서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해법으로 뜬금 없이 '평준화 해체' 제기... 학생인권조차

사립학교 잇속 차리기에 이용하려는 속셈 드러나(8.31)/ 서울북부지법,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본안심사 판결 때까지 학생신분 보전된다고 판결(9.1)/ 강의석 학생, 지난달 11일부터 시작한 단식 등교 후에도 풀지 않아..."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보장할 때까지 단식 계속할 것"(9.6)

2.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주춤거릴 이유 없다

대법원,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유죄 판결로 사실상 국보법 존치 입장 밝혀(8.30)/ 한나라당, 글자 몇 개 고친 기만적 개정안 발표(8.31)/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안정적 개정을 위한 모임', 독소조항 그대로 둔 개정안 발표(9.1)/ 지난 7월 22일 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도보행진' 1350km 대장정의 막 내려(9.5)/ 국회 앞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 열려(9.5)/ 노 대통령, MBC '시사매거진 2580'과의 특별대담프로에서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9.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종린 명예 의장, 재판 거부 선언해(9.6)

3. 파병 연장, 그렇게는 안돼!

국방부, 파병 시한을 내던 말까지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9.1)...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 열어 파병연장 반대와 자이툰 부대 철수 촉구(9.3)/ 김재복 수사와 박기범 동화작가, 추가파병 저지를 위한 단식평화순례 대장정 올라(9.4)...두 평화운동가 각각 43일, 29일째 단식/ 경북 울진에서도 파병 반대와 철군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35일째 이어져...지금까지 121명 참여(9.6)

4. 형사소송법 개정안, 눈 가리고 아웅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인권침해의 근원적인 예방 방안에는 눈감아(8.29)/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기자회견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 무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비난(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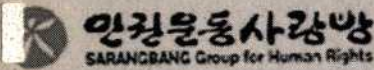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유모 씨 1년6월 실행 선고받고 법정구속(8.30)/ 경찰, 불심검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방침 밝혀(9.6)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08일 (수)

제 26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반성과 참회 없이 뗏뗏할 수 없다"
2.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3.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4. <알림> 구독료 지로용지에 대해

"반성과 참회 없이 뗏뗏할 수 없다"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교문에 들어서면 승공, 덜공의 구호로써 학교생활이 시작되었고, 매 시간마다 학급 반장은 선생에게 반공 경례를 올려야 했다. '매려잡자 공산당', '박살내자 북괴군'의 글귀를 담은 포스터 그리기며, 반공 웅변대회로 반공 세뇌교육을 시켜 우리 민족끼리의 적개심을 고취시켰다. 이제 치욕으로 점철된 반공교육 시대를 뗏뗏하게 살아오지 못한 퇴직 교사로서 굴종과 회의를 반성한다" 성동여실업고 퇴직교사 이희협 씨는 그동안 자신이 행해온 반공교육을 하나 하나 짚으며 자신의 과거를 참회했다.

원로교사 20여명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욕스런 과거에 대한 근본적인 참회 없이는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켜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반공교육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교사들이 고백하는 치욕스런 과거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다. 원로교사들은 "선생은 병어리 냉가슴 앓듯 역사의 진실을 입 막아 감추어야 하고 속 시원히 터놓고 맘대로 말할 수 없는 존재였다"며 "간혹 무심중에 북쪽을 칭찬하거나 남쪽의 문제점을 비판하다보면 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이라는 죄목으로 어처구니없는 큰 피해를 당할 때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원로교사들은 이와 같은 아픔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1년 '아람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구속되어 해직된 퇴직교사 정해숙 씨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은행초등학교 교장 이상선 씨도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공 교육을 통일 교육으로 바꾸어 짓밟힌 우리의 양심을 되살려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회선언에는 원로교사 외에도 현직교사와 사범대생 예비교사들이 함께 해 "남아있는 반공교육을 없애고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현직교사 김경옥 씨는 "교실에서 북한 동요를 틀어주면 '고무·찬양죄'가 되었고 북한에 관련된 프린트를 나누어주면 '이적표현물 배포·제작죄'가 되며 부모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면 '불고지죄'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에 얽매인 교육의 현실을 꼬집고,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자유와 자주성,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라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 파병동의안 등 4대 반인권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8월 25일자 참조>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았

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경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위를 벌였다"며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준비한 인권활동가들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이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등 집회·결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며 처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맹 변호사는 "(인권활동가들이) 국회 서클버스를 타고 국회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느냐"며 "주거침입 역시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반인권 법안들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국회의원에게 전하고자 했을 뿐인데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기사 처음으로>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어 수용자 인권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시설인 '교남소망의 집'(원장 황규인)은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원22주년 기념세미나를 열고 '교남장애인 인권보장규정' 시안(아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자기관리 및 위생 △개인물품 관리 △주거생활 △종교생활 △성생활 △식생활 △프로그램 참여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등 수용자가 개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 보장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 등 사회적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시설 수용자의 권리 명문화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장애인들 개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획일적인 머리모양과 의복을 강요해 왔고, 생활공간을 수시로 견학자 등 타인에게 개방하며 개인물품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안에서는 개인의 취향을 인정해 의복·머리모양·화장 등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이 화장실이나 목욕공간을 사용할 때에도 '관리편의'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미신고시설이나 기도원에서 예배 등 종교행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것에 대해서도 시안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의 원리를 시설 장애인들에게도 보장하기 위해 "종교 활동에 대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감금과 폭행, 학대 등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연령에 상관없이 어린이로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정신적 폭력도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외에도 시안에는 노동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은 전액 장애인의 소유로 하며 투표 시 대리투표나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설 내 컴퓨터, 전화 등 정보매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과 시설 직원 사이에 별도의 식사나 식사공간, 특정용어의 사용, 유니폼 착용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며 장애인이 시설 안팎에서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나는 것과 외부인을 초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시안에는 인권침해 사실을 보고 받고 조사하는 상설기구로 기관장 직속의 '교남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아래 위원회)를 두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돕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등 행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또 인권침해 가해자가 직원일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아름다운재단 공익번호사 그룹 공감 연합국 변호사는 "시안은 교남소망의 집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며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면에서 장애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노인, 아동 등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칭) '시설생활자인권보장법'으로의 확장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노인·아동·부랑인 등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수용된다는 점에서 수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시안에 대해 세미나 초청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환영을 표하면서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승경 팀장은 "시설은 소위 '정상'적인 삶에서 내몰린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고 시설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생활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 수 있어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상황에서 "시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구체적인 시설생활자 인권매뉴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팀장은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인권침해 사실조사와 처리의 객관성 보장을 위해 위원회에 반드시 1인 이상의 외부인 참여 보장 △투표시 정신지체 장애인이 두려움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선거보조인 신청 등 시안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안을 발표한 교남소망의집 윤덕관 재활사업실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10월 초에 규정을 확정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남소망의집'은 현재 72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지난 98년 이후에는 6세대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만들어 16명의 시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구독료 지로용지에 대해

지난달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용지가 늦게 발송되어 납부해야할 금액이 일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요청을 하시는 경우 지로용지를 다시 보내 드리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잘못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해당월 구독료로 수정해 납부하셔도 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09일 (목)
제 26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 2.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개정판
- 3. '소용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 4. <알림> 다큐멘터리 시사회 '708호, 이동편의 편지'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오랜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색내기식' 입법안을 내놓아 장애인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올해 4월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 공동위)는 이동편의 증진법안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채택 △실질적 차별조항의 누락 등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 공동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정부가 마련한 '이동편의 증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무기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동보장법률' 마련을 위한 투쟁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확산된 이동권 투쟁의 자양분을 흡수, 2002년 10월 이동보장법률 입법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점화되었다. 2003년 10월 서울·경인, 충북, 경남 지역 등을 아우르는 입법추진 공동위가 생겨났고 지난 7월 19일에는 마침내 이동보장법률 입법 발의, 이동편의 증진법안과 함께 17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김도현 정책교육국장은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인식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가두어 놓고 생긴 이동편의 증진법안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동보장법률은 저상 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10년 이내에 전체 대중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동편의 증진법안은 2014년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에 한하여 시내버스 중 10%만을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것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하다. 적잖은 제정이 소용되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권장사항으로 둘 경우, 그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도현 정책교육국장은 "지하철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저상버스 도입이 더욱 절실한데, 이동편의 증진법안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보장법률은 대상 교통수단의 범위를 항공기, 택시, 고속철도 등 비장애인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교통수단의 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한 반면, 이동편의 증진법안은 택시를 대상 교통수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 공동위는 "회사에서 운영되는 택시는 일정비율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세울 경우, 이동보장법률은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들로 구성하고 시정명령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하고, 그나마 중앙기구도 건설교통부의 계획을 '심의'하는 권한만 가질 뿐이다. 또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이 운송사업자 및 교통주관기관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접 시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솜방망이에 머무르지 않게끔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편의 증진법은 차별조항이 빠져있다. 이동보장 입법추진 공동위는 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중순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감옥관련 법령자료집」 개정판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4년 9월 / 519쪽 / 14,000(우송료 3,500원)

문의 : 유혜정 (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지난 2002년 발간 이후 수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의 개정판이 나왔다. 법무부의 징벌 및 계구 관련 규칙 개정작업으로 지난 1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던 법령자료집은 법무부의 규칙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개정판 발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징벌 및 계구 규칙은 연속징벌을 금지하고 계구사용심사부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일정부분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설 등의 비인도적 계구 사용의 여지를 남겨놓는 등의 기존의 한계 극복에는 실패했다.

보장된 감옥법령자료집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헌법과 행정법, 국가인권위법 등을 비롯해 새로 개정된 징벌 및 계구규칙 등의 교정관련 규칙과 예규가, 2부에는 군행형법과 소년원법, 사회보호법 등의 법률과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 기준이 실렸다. 법률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수인 '스스로'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들은 3부에 담겼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형사소송법과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의 법률이 차례로 담겼으며,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의 절차와 각 소송양식 등이 포함된 것. 여기에 부록으로 법무부 교정관련 훈령 및 예규목록과 참고하면 좋은 책과 자료들의 목록도 자료집 한권에 놓여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취지 하에 <감옥인권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은 올해 초 <감옥인권시리즈 2-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낸 데 이어 연말까지 <감옥인권시리즈 3- Making Standard Working 감옥기준 만들기> (2004. 12월 발간 예정)와 <감옥인권시리즈 4- 체포에서 구금, 그리고 석방까지> (2004. 12월 발간 예정) 등을 펴낼 계획이다.

단, 이 모든 자료들은 '현금'으로 판매한다. 이는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외부송금'을 의례적으로 차단하는 감옥의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기사 처음으로>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지난해 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이 개악된 데 이어 지난 7일 소음규제 주 골자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두세 차례 경고하고 그래도 이를 위반할 경우 확성기를 압수하며, 이에 불응하면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회 주최측이 정한 질서유지인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은 집회에서 확성기를 쓸 경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을 이와 같이 수치화 시켜 규제하겠다는 것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시행령을 비판해왔다. 경찰은 지난 4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며 '집회시 합리적인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결국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한 '집시법 시행령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8일 성명을 통해 "주로 집회가 개척되는 거리는 집회를 하지 않을 때에도 배경소음이 70~80데시벨이어서 집회 현장의 확성기 소리가 약간만 더해져도 80데시벨은 훌쩍 넘게 되어 있다"며 "침묵 시위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집회 현장에서 소음을 놓고 집회주최자와 경찰사이에 잦은 충돌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집시법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와 처벌만을 내세우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연석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악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연말 개정된 집시법도 집회 중 사소한 방어적 폭력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른바 '폭력시위'라는 구실로 당해 기간의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도심에서 허용되던 행진마저 금지하거나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대폭 넓혀 '집회금지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다큐멘터리 **심사회 '708호, 이등병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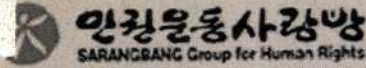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이라크 파병 반대를 주장하면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강철민 씨가 기독교 연합회관 708호에서 농성을 벌인 8일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농성부터 연행까지 강철민 씨의 고민, 그리고 함께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시 : 2004년 9월10일(금) 오후7시
 ·장소 : 연세대학교 공대 C관 대강당
 ·문의 : 이준희 011-9089-8514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10일 (금)
제 26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2.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3. 베슬란 학교 참사가 보여준 진실
4.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정치인과 보수세력들의 발악이 눈물겹게 이어지고 있다.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교류가 안 되는 게 없었다. 지난 10년 간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 없다고 본다"며 국가보안법의 반인권·반민주성을 부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비상시국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9 시국 선언문'을 발표,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가 그리고 보수세력들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알기는 한 걸까.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오로지 획일화된 반공논리만을 주입시켜왔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탐골공원에서 열린 535회 목요집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적용기준과 비합리적인 재판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며 "박 대표와 보수세력들은 '정권안보'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도 그 파고를 사죄하기는커녕 거짓말까지 하면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기대 기대권을 유지해온 집단들의 낡은 사고체제도 함께 없애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동시에 보완책으로 대체 입법과 형법보완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행동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는 이와 같은 비폭력적 선동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생각과 사상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인권·사회단체들은 말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지 않을 경우 56년 동안 악명을 떨쳐왔던 국가보안법이 즉자마자 부활할 수 있는 옷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도 8일 성명을 통해 "처벌의 공백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일"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아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미성숙'과 '나이'를 핑계로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청소년들에 대해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우리 나라의 선거 연령은 사회 모든 분야가 변화·발전한 4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왔다"며 "선거연령의 문제는 참정권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시스템 전반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청소년학과 최윤진 교수는 "1960년에 규정된 20세 선거 연령은 기존의 타당성, 적정성, 다른 법률 및 기준과의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현재 18세 청소년들에게 병역, 납세 등 많은 법적 의무를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거참여 연령이 낮춰져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시민문화네트워크 전효관 대표도 "청소년은 이미 일상적으로 정치적 실천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조차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사후 승인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선거권은 단순한 정치적 권리 부여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을 주체로 인정하는 문제"라며 "청소년을 이끌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강박관념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 연구위원은 "전 세계 119개 나라 중 82%인 98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다"며 "이중 많은 국가가 70년대를 전후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던 입법사례를 봤을 때 유독 우리 나라만 20세를 고수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김창학 정책위원은 "청소년들이 정치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문석 학생청소년위원장도 "한국사회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근거 삼아 학생청소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현실을 불모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가두는 것"이라며 "자치 활동을 통한 체험과 자율 영역의 확대 등 청소년들의 정치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서울국악예고 이계덕 학생은 "4.19나 5.18 등에서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참여를 했던 반면, 지금의 학생들은 억압하고 규제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그런 힘을 잃어버렸다"며 "불만이 있어도 표출할 수 없는 경험이 20살이 되어도 정치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기사 처음으로>

베슬란 학교 참사가 보여준 진실

인권·사회단체, "러시아의 체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원인"

천오백여 명의 생명들을 아비규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결국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낳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함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간직하게 만든 러시아 북오세티야 공화국 베슬란 학교 참사의 주범은 누구인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9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야만적 진압작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어린이와 여성들을 인질로 잡고 무력을 행사한 인질범들의 행동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정부가 주도한 끔찍한 진압작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푸틴은 대규모 인명 피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무력 진압을 택했다"며 "푸틴이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라고 외쳤다. 더욱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는 기자들을 감금하는 등 언론통제를 통한 진상 은폐에 급급했고, 이번 무력 진압을 유발적인 것인 양 위장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지난 2002년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에서 인질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실내에 독가스를 투여하는 진압 방법을 택해 백여 명의 관람객이 생명을 잃었다.

현재 이번 참사의 인질범으로는 체첸 반군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함께의 김인식 운영위원은 "러시아 정부가 서방지도자들의 묵인과 승인 아래 체첸을 잔혹하게 공격해 왔는데, 이 과정 중에 잉태된 비극의 씨앗에서 절망을 수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보이는 참사의 기저에는 러시아 정부의 체첸에 대한 오랜 탄압의 역사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체첸 공화국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 요충지인 카프카스 산맥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체첸은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석유 패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무력 침공으로 대응했다.

두다예프가 체첸 공화국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을 94년 당시 두다예프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은 잠정평의회를 세워 무장 투쟁을 벌였다. 이를 빌미 삼아 러시아 정부는 체첸에 병력을 투입했고, 그 결과 3만 명이 넘는 어린이를 포함, 8만여 명의 체첸인이 학살당했고 25만 명이 집을 잃었다. 또한 99년 체첸 반군이 신생독립국 '체첸-다게스탄 공화국'의 건설을 공포하며 독립을 선언하자,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지역에서 일어난 연이은 테러를 체첸반군의 행동으로 규정하며 체첸 반군 거점에 공중폭격을 가했다. 99년 2차 침공에서 역시 러시아 정부는 무자비한 처형과 강간을 자행하며 4만 명에 이르는 체첸인들을 죽였다. 김 운영위원은 "아름다웠던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는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지형이 평평해졌을 정도"라며 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탄압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러시아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해 "러시아 정부는 체첸을 떠나고 체첸반군과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미니 활동가는 "국적, 민족, 인종 등에 관계없이 인권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국내 인권운동진영이 체첸이나 팔레스타인 등 전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에서 큰 참사가 터지고 나서야 한시적으로 연대를 표명한다"고 지적하며 "일상적인 연대"를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열린우리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증처벌과 인권침해로 비판받아온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사회보호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이증처벌과 인권침해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사회보호법 폐지밖에 없다"며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1981년 제정된 이후 2002년까지 무려 1만31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형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어 이증처벌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출소 폭을 확대해 보호감호소 피감호자가 1천명 이하로 줄었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11일 (토) 제 26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 1.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2.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 3.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 4. 분정과 데어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머릿속을 통제해 사상·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자유민주주의'였다. 또한 애매한 법 조항에 따른 처벌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패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았던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자 누구인가?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반공이데올로기적 억압체제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대가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장치라며 자못 비장한 얼굴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수구적인 정당과 언론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휘날리거나 노동당 가입원서를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가상의 공포를 만들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폐해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정치적 고비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써왔던 해묵은 색깔론이 지겹지도 않은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도 처벌공백을 없앤다는 이유로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계승한 새 법을 만드는 것이나 형법에 넣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해 역시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일례로 여당의 형법 개정안 중 제90조 선전·선동에 대한 처벌은 현재 국보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7조를 옮겨 똑같은 인권침해 효과를 낼 것이 명백하다. 언제든지 정권안보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칼을 칼집만 바꾸어 그대로 두려하는가?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없애 인권과 민주주의의 새 장을 펼친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형법에 그대로 옮긴 기만적인 정당이 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무덤으로 보내면 된다. 아니 그동안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왜곡의 역할 외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흔적을 남기는 무덤도 필요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살려내려 획책하지 말라.

<기사 처음으로>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정부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더니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해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아래 철폐연대)도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서조차 건설업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파견 노동 확대방안으로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 완전 자유화"라고 꼬집었다. 파견허용기관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철폐연대는 "해고와 고용의 반복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을 의미할 뿐"이며,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량해고를 겪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해왔다. 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분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남용"을 없애겠다며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어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는 해괴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파견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은 현행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기간제고용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한하는 것만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기간제 노동 계약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뿐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이며, 현재 전체노동자의 60%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안이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은 파견법 개정을 막기 위해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력투쟁일정을 앞당겨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노동단체들도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사 처음으로>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단체 직접행동, 인권위 진정 및 손해소송 준비 중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에 돌입한 것은 지난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토요일마다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의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하여만 허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형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도관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자의 권익확보와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용자들의 인권에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를 규탄했다. 비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하는 수용자들에게 운동과 접견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결국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오전 11시에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여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수용자 접견권 및 운동권 제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면회객들로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동생을 면회하러 왔다가 이날 서명에 동참한 60대 초반의 남성은 "예고 그러면 안되지. 토요일 날 쉬는 거야 이해 하지만 그렇다고 애들 운동하고 면회를 못하게 하면 쓰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지"라며 서명판에 자신과 자신의 동생 이름을 한자 한자 힘주어 적었다. 교과서를 펴고 면회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여고생도 격주로 토요일 접견이 안 되는 바람에 "아빠를 보기 위해 조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앞으로 행형네트워크는 17일 한차례 더 서울구치소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후 모아진 서명을 수용자 가족들의 집단 진정 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국가상대의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기사 처음으로>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14일~17일 개최 ... 엔지오포럼도 열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분쟁과 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14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실무운영단장을 맡은 최영애 상임위원은 "9·11테러 이후 테러 조치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큰 관심이 있었다"며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분쟁상황을 줄이고,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무력분쟁과 테러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며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조치들을 채택 혹은 발표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테러 조치의 하나인 '애국가법'은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하고 도청, 감시모니터 설치 등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했다. 2003년 6월 유엔의 특별보고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테러리즘을 비난하면서도 "테러 조치가 모든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는 △분쟁과 테러과정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분쟁상황에서의 국가기구의 역할 △분쟁과 테러리즘의 맥락에서 이주문제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를 중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대회 기간 동안 이루어진 토론 등의 결과는 '서울선언문'으로 만들어지며, 유엔인권위에도 보고된다.

이번 대회에 앞서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등이 주최하는 엔지오(NGO)포럼도 11일부터 14일까지 준비되어 있다. 지난 여섯 차례의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는 민간단체의 공식적인 참여가 없었으며 별도의 사전 민간단체 회의도 조직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열리게 되는 엔지오포럼은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인권 현장의 관점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인권기구와 민간단체의 협력관계에 관한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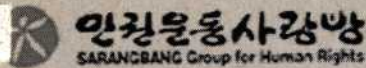
한편,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1991년 파리에서 열린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 2년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미주 지역 등을 순회하며 개최되어 왔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cni.org>, 엔지오포럼은 <http://minbyun.jinbo.net>을 참고하면 된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14일 (화)
제 26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안보' 핑계 대지마!
2.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걷는다
3.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국가 폭력에 맞서야 한다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그동안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왜곡의 역할 외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무장해제'라며 필적 뛰는 이들도 '처벌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들도 한결같이 '안보'를 외친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민들의 어떠한 안보를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쨌든 '안보'라는 절대절명의 가치 앞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득권 안보' 빨간 불, 국보법 출동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민청학련(1974년), 제헌의회(1986년), 민주주의학생연맹(1992년)도 모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민정부 이전의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들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등 노동운동 과정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규모 구속사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노동관련 법들과 제도들이 국가 안보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빠뜨리지는 않는다.

이처럼 정권은 안보와는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서 '안보'를 구실로 국민들의 저항을 무마시키고 정권의 횡포를 합리화했다. 감히 정권에 반대하고, 국가에 간섭하는 자들, 정권이 보기에 '뻔뻔한 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정권이 위기에 처해 빨간 불이 켜질 때마다 출동해 '그들만의 안보'를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결국 국가보안법이라는 토대가 만들어주는 달콤한 '혜택'들이 바로 기득권 세력이 '안보'를 핑계삼아 국가보안법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이유이다.

국보법, 머릿속까지 처벌하다

기득권 세력이 '안보'를 팔아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또 다른 이유는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허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얻게 되는 이득 때문이다. 정권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국민들을 대동단결(?) 시켜 저항을 잠재우고 부조리를 참고 견디게 만든다. 안보이데올로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숙이 공포와 중오의 씨름 띄우고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얻어낸 '국민들의 침묵의 열매'가 바로 정권이 말하는 '안보'다. 결국 기득권은 '안보'라는 괴물을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규정된 죄의 전 단계나 전전단계 즉,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말 그리고 글 등 '내심'의 문제를 가지고 처벌을 하려다보니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적용과 남용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도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쥌 수 있었으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었다.